



CUSTOMS LAW FIRM
BROCHURE
2020



기업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을 위한
관세법률사무소의 서비스

 관세법률사무소
Customs Law Firm

contents

01

기업심사란?

02

기업심사 대상자의 선정

03

기업심사 기간과 방식

04

기업심사 대상

05

범칙예비조사 전환

06

기업심사 결과

07

관세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01 기업심사

1. 기업심사란?

기업심사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 즉 관세조사를 의미합니다.

02 기업심사 대상자의 선정

1) 법인심사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심사라 합니다.

2) 기획심사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획심사라 합니다.

03 기업심사 기간과 방식

1. 기업심사 기간과 방식

기업심사 기간은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일 이내로 결정됩니다. 필요시 120일 이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는 방문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관에서는 통상 20일 정도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합니다.

방문심사 기간은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20일 이내의 범위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기업심사 총 기간은 90일 정도이고, 이 중 방문심사 기간은 보통 3주 정도입니다.

다만, 수출입 규모가 큰 경우 방문심사 기간이 4주 정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04 기업심사 대상

기업심사 대상

기업심사 무역거래 전반, 회계 및 세무, 과세가격, 특수관계 거래, 관세환급 및 감면, 통관요건, 원산지, 외국환거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05 범칙예비조사 전환

범칙예비조사 전환

기업심사 과정에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등 관세법 위반행위,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 등 위반행위,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06 기업심사 결과

기업심사 결과

기업심사결과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범칙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범 등에 대하여는 고발·송치의뢰하거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합니다.

07 관세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1) 기업심사대상 선정이유부터 분석

기업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왜 기업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합니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관세청 법인심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기업심사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한 분석부터 대응을 시작합니다.

기업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파악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07

관세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2) 기업심사 방문조사 대응

김민정 변호사는 세관근무시 기업심사 전문요원으로 납세심사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관세법률사무소에서는 김민정 대표변호사가 방문조사시 직접 사업장에 나가 상주하며 세관 기업심사팀과의 의사소통하며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기업심사 포커스를 알고 대응합니다.

세관 기업심사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세관 출신 변호사 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세범칙조사 대비

기업심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 방어해야 하는 것은 관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법률사무소에서는 관세청 출신 김민정변호사가 수많은 관세범칙사건을 세관, 검찰, 법원단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기업심사 단계에서 관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07 관세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4)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응

기업심사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관세법률사무소는 세관뿐만 아니라 금감원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대응, 법원단계까지 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미리 알고 대응합니다.

5) 행정전문변호사의 추징 대비

관세법칙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정 대표변호사는 서울세관과 인천세관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이의신청 위원 출신입니다.

관세법률사무소에서는 행정전문 김민정변호사가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까지 고려한 대응을 합니다.



김민정 대표 변호사

02-587-7250

010-7318-7250

lawyer0223@naver.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7층 704호